

# 30대 은행원의 과로사, 기저질환 넘어 업무상 재해 승소 사례

발신

법무법인 마중  
기획지원실

“근무 환경과 질병 악화 요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법원이 인정한 과로사의 인과관계”

## 1. 사건의 배경

2023년 3월, 한 금융권 종사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습니다.

30대 후반의 A씨는 11년간 은행 여신 업무를 맡아 오며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모처럼의 휴일 중 들른 골프연습장 차량 운전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당시 A씨는 30대의 젊은 나이였기에, 유족은 A씨의 사망이 개인적 사유가 아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와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가족은 본 공단의 결정에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A씨는 생전 당뇨,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기에, 이러한 부분이 산재로 인정받는데 다시 한 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유가족은 법률대리인(법무법인 마중)을 선임, 행정소송을 통해 이 사건을 다시 다투기로 했습니다.

## 2. 법무법인 마중의 변론 및 결과

공단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씨의 사망과 업무 간 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이를 위해 다양한 근거자료를 수집하고,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과 전문 의견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해 나갔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쟁점1 A씨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인가

### 주장1 공단이 산정한 A씨의 업무시간은 실 근무 시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발병 전 12주동안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을 약 46시간으로 산정하며, 주 52시간의 과로 기준에 미달하므로 과로로 인한 급성심근경색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산정결과는 오직 A씨의 업무용 PC 로그인 시간만을 기준으로 한 결과였습니다.

A씨가 근무하던 은행은 평일 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만 업무용 PC 사용이 가능하며, 이외 시간에는 별도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시스템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승인 절차가 다소 번거로웠기에, 많은 직원들이 연장근무 시 외부망 접속용 PC나 개인 노트북을 이용해 추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A씨도 이와 마찬가지로, 공단이 산정한 근무시간은 이러한 실제 근무 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은 A씨의 주말 근무, 정규 근무 외 시간에 집에서 진행한 추가 업무, 회식 등으로 인한 간접 업무 시간 역시 근무 시간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공단의 근무시간 산정은 지나치게 협소한 기준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단이 누락한 시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A씨의 실제 근무시간은 주 52시간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A씨의 만성적인 과로 상태를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 주장2 A씨는 사망 직전 업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직전, 업무분장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직무를 맡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업무 과중이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A씨가 수행하던 여신 업무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심사를 소홀히 할 경우 징계 및 손해배상 등의 위험을 동반하는 업무였기에, A씨는 업무 시간 내내 상당한 정신적 긴장을 한 채 근무해야 했습니다.

특히 사망 직전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A씨는 다수의 여신 심사 건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리는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해당 업무는 높은 책임감과 판단 부담이 수반되는 일이었으며, 이로 인해 A씨가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점은 동료 직원의 진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쟁점2 A씨의 기저질환이 사망의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가

급성심근경색의 주요 원인인 동맥경화 및 혈전은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과 같은 건강상 위험요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A씨는 과거 심혈관 질환 치료 이력이 있었고, 비만과 고혈압, 당뇨병을 함께 앓고 있었습니다.

## 발신

법무법인 마중  
기획지원실



www.majunglaw.kr

이메일  
majunglaw@naver.com

전화  
02-3143-1158

발신

법무법인 마중  
기획지원실



www.majunglaw.kr

이메일  
majunglaw@naver.com

전화  
02-3143-1158

그러나 A씨에게 해당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상병의 발병을 높일 수 있는 업무적 요인이 있다면 이 요인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의견에 따라, **A씨의 사망에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행정법원은 A씨가 수행해 온 업무로 인한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과로가 급성심근경색의 발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거나, 해당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분들은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3. 본 판결이 시사하는 바

이번 판결은 이번 판결은 젊은 나이임에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이, 당뇨와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산재 인정에 있어 기저질환과 같은 개인적 요인만으로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부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 근무 시간과 업무 환경을 면밀히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줍니다.

특히 단순한 출퇴근 시각이나 PC 사용 기록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수행 실태를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판례로서, 향후 유사 사건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앞으로도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앞으로도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마중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마중은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에 특화된 로펌으로, 신청부터 소송, 합의, 유관 법률 자문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각 사건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법무법인 마중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관련 구성원

**김용준**

대표변호사

yrince@majunglaw.kr

**배정범**

수석변호사

jeongbom@majunglaw.kr

## 발신

법무법인 마중  
기획지원실

---

\* 법무법인 마중 레터는 일반적인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마중의 공식적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서울 광화문 | 대전 | 부산 | 대구 | 광주



www.majunglaw.kr

이메일

majunglaw@naver.com

전화

02-3143-1158